



행정자치부

국민행복
대한민국
정부 3.0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시 주의사항 통보

1. 국회 우윤근 의원 요구자료(2016.1.14.) 관련입니다.

2.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, 행정자치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. 행정자치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의 규정에 따라 공사 원가계산 시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, 공사손해보험료,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, 그 중 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와 부대비용에 대해 계상하고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, 부산품,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 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재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정가격 결정 시 철거로 발생하는 고재 등을 재료비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내용을 시?군?구(교육지원청) 및 산하 공사?공단?출자?출연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